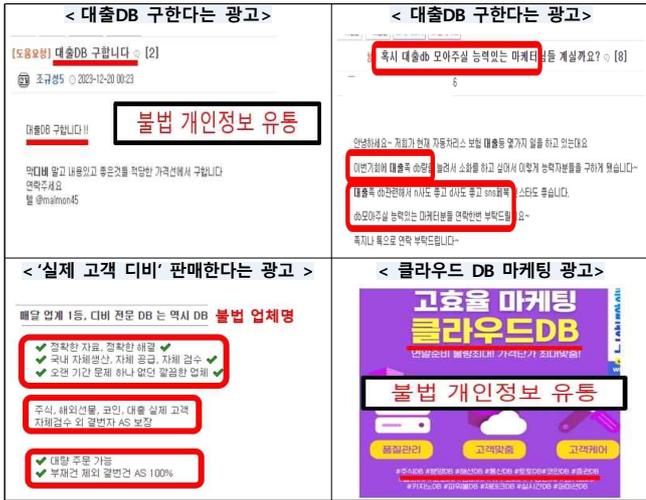


3 개인정보 정보 불법 유통 광고

[주요 키워드] #대출 DB, #고효율 마케팅 DB, #주식DB, #해외선물DB

-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개인정보 유통 광고글을 게시
 - “대출DB”, “주식DB”, “해외선물DB”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를 구매/판매한다는 광고를 ‘마케팅관련’ 게시판 등에 게시
 - “실시간 DB 추출”, “감도 높은 DB”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, 보이스포징, 불법사금융,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



III. 주요 피해사례

※ 해당 사례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사례임

1 인터넷 불법대부광고 피해사례

·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, 주민등록증·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(가족3명 포함)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함

·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하였으나,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음

·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하였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,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 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음

불법사채 접촉경로
고금리피해
불법추심 두려움

2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불법 금투업체 피해사례

· 과거 불법 금융투업체에서 영업직이었던 B씨는 자신의 불법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“DBOO” 업체가 대출/주식/외인 DB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

· B씨는 “DBOO”로부터 주식DB를 건당 10원, 총 10만건을 구매하여, 마치 정식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

·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씨는 해외선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3천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가짜 HTS로 거래를 진행

· 가짜 HTS 화면에는 며칠만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천6백만원으로 나타남

· 그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천만원 추가 요구

·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B에게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자,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

불법 개인정보 유통
가짜 HTS에 현혹
연락 두절 및 피해 발생

IV.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1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!

-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당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
 -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‘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’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거래하고,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·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*인지를 확인
 - * 금융감독원 ‘파인 홈페이지(fine.fss.or.kr) → ‘금융회사 정보’ → ‘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’에서 확인
 - ** 서민금융진흥원(kinfa.or.kr, ☎1397), 신용회복위원회(ccrs.or.kr, ☎1600-5500) 등
- 대출상당과정에서 가족·지인 연락처, 신체사진,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
-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(신용)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대출, 대출사기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 요망

2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·해외선물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!

-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·구직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
-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·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

3 불법 개인정보 정보 판매/구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!

- 개인정보 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
 -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

※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http://www.fss.or.kr)